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
----------	----

제출년월일 : 2001. 7. 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민원편의 제고 및 지방세입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서에 명시토록 함(안 제5조)
-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공유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 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
- 다. 구에서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이자를 면제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의 매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 라. 농경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농지소득 금액에서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으로 변경하여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3조제2항)
- 마.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공장유치에 대하여는 구유지의 대부 및 사용요율을 낮게 적용(1000분의 10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9항)
- 바. 구유지내 2층이상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제2항)

- 사. 공유재산에 대한 전세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상재산, 전세금산정·예치·반환 등 세부 처리절차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의2)
- 아. 사용료·대부료·변상금등의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을 도모함(안 제28조제1항)
-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 차.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함(안 제28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 나. 소요예산 :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우편료(년간 200만원 정도)
- 다. 사전절차 : 입법예고 결과 주민제출의견 없음
- 라. 관련부서협의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에”를 “법제88조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제한” 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으로 하고, 동 조제1항중 “행정재산” 을 “행정재산·보존재산” 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행정재산” 을 “행정재산·보존재산”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허가 기간” 을 “사용·수익허가 기간” 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로 하며, “사용허가” 를 “사용·수익허가”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허가 조건” 을 “사용·수익허가 조건” 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로 하며, 동조 제7호및제8호중 “사용허가” 를 각각 “사용·수익허가”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허가부의 비치” 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로 하고, 동조 본문중 “사용허가부” 를 “사용·수익허가부” 로 한다.

제19조의3제4호및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중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을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으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로 하며, 동항 제8호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잠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파산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중 “1000분의 50” 을 “1000분의 50이상” 으로, “1000분의 25” 를 “1000분의 25이상” 으로 하며, 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 대부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3조제4항중 “1000분의 40” 을 “1000분의 40이상” 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1000분의 25” 를 “1000분의 25이상” 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로, “1000분의 10” 을 “1000분의 10이상”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관내로 이전하는 때
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우리구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3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각호의 1과 같다”를 “각호에 의한다”로 하며, 동조제1호 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제2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이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 을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 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 을 “분할매각” 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된 매각면적의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 (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 이상 매각목적으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동기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지역내의 공유재산

제38조의3제3항제2호중 “30억” 을 “10억” 으로 한다.

제38조의3제4항제2호중 “1천만” 을 “500만” 으로 하며, 동항 제5호중 “원자재” 를 “원부자재” 로 한다.

제38조의3제5항제1호중 “500만” 을 “300만” 으로, “1천만” 을 “500만” 으로 한다.

제46조 제목 “시 설계심사위원회 심의” 를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로 하며, 본문중 “부산광역시 설계심사위원회운영조례의” 를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등의 적용례)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제2항의 신설 규정에 의한 대부료 산출기준과 제25조의의2 신설규정에 의한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의 납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 요율은 기존의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증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변상금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마을회관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p>

현행	개정안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①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③(생략)</p> <p>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p> <p>⑤(생략)</p>	<p>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①법제88조에-----</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조(구 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다만, 공유잡종재산의 처분시 100제곱미터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2. <삭제 '99. 5. 31>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7조(구 공유재산심의회) ①----- ----- ----- -----.</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현행	개정안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지역: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 일반시지역:600제곱미터이하토지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4.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 <p>④(생략)</p>	<p>3. 330제곱미터 이하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 ----- ----- ② <삭제></p> <p>③ <삭제></p> <p>④(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생략)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생략)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영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3. ~7(생략) 8. 구청장이 경영수의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p>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p> <p>-----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 ~7(현행과 같음) <p><삭제></p>

현행	개정안
<p>9. 제8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p> <p>10. (생략)</p> <p>② (생략)</p> <p>③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영 제95조제2항제3호,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p><신설></p>	<p><삭제></p> <p>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④영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현행	개정안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u>1000분의 25</u>로 한다.</p> <p>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u>1000분의 50</u> 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의 <u>1000분의 8</u>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p> <p>③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p>	<p>1.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p> <p>2. 천재·지변, 파산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 ----- ----- <u>1000분의 50이상</u>----- ----- ----- <u>1000분의 25이상</u>-----.</p> <p>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 가격의 <u>1000분의 10</u> 이상으로 한다.</p> <p>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 대부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이상</u>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p>

현행	개정안
<p>1.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p>1. ~ 2.(생략)</p> <p>⑤(생략)</p> <p>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⑦ ~ ⑧(생략)</p> <p><신설></p>	<p>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④----- -----1000분의 40이상-----.</p> <p>1. ~ 2.(현행과 같음)</p> <p>⑤(현행과 같음)</p> <p>⑥----- -----1000분의 25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1000분의 10이상-----.</p> <p>⑦ ~ ⑧(현행과 같음)</p> <p>⑨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관내로 이전하는 때.</p>

현행	개정안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전액 감면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p> <p>나. ~ 사(생략)</p> <p>2. ~ 3.(생략)</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생략)</p>	<p>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우리구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감면)</p> <p>-----</p> <p>-----</p> <p>---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p> <p>-----</p> <p>-----</p> <p>각호에 의한다.</p> <p>1. -----</p> <p>-----</p> <p>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제1항제2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p> <p>-----</p> <p>-----</p> <p>나. ~ 사(현행과 같음)</p> <p>2. ~ 3.(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p> <p>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 (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p> <p>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현행	개정안
<p><신설></p>	<p>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p>
<p><신설></p>	<p>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에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p>
<p><신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수 있다.</p>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삭제></p> <p><삭제></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p> <p>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p> <p>①----- ----- ----- -----하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안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8호·제9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신설></p>	<p>②구청장이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생략)</p>	<p>제38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p> <p>①(생략)</p> <p>1. ~ 2.(생략)</p> <p>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재산</p> <p>②(생략)</p>	<p>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된 매각면적의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1. 도시계획범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이상 매각목적으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p> <p>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p> <p>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p> <p>①(현행과 같음)</p> <p>1. ~ 2.(현행과 같음)</p> <p>3.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지역내의 공유재산</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생략)</p> <p>2.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30억 달러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부 대시설내의 재산</p> <p>3. (생략)</p>	<p>③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10억 ----- -----</p> <p>3. (현행과 같음)</p>
<p>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생략)</p> <p>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지내의 재산</p> <p>3. ~ 4. (생략)</p> <p>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조달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 사업지내의 재산</p>	<p>④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500만----- -----</p> <p>3. ~ 4. (현행과 같음)</p> <p>5. ----- ----- -----원부자재----- -----</p>
<p>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2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⑤ ----- ----- ----- -----</p>

현행	개정안
<p>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u>500만달러</u> 이상 <u>1천만달러</u> 미만인 사업지내의 재산</p> <p>2. ~ 4. (생략)</p> <p>⑥(생략)</p> <p>제46조(시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 ----- -----<u>300만</u>----- --<u>500만</u>-----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⑥(현행과 같음)</p> <p>제46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u>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u>----- ----- -----.</p>